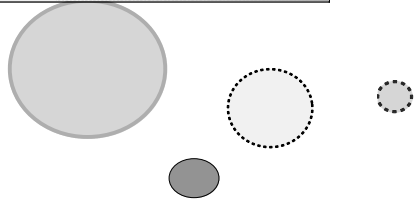




2023 변리사(객관식)



# 민법개론

## □ 강사 소개

### 1. 약력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민사법 전공, Ph.D.) 수료
- 現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가 과정 강사(민법, 민소법)
- 現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법학회 이사
- 現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인천대학교 법학과,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특강 강사
- 現 변리사스쿨 민법/민사소송법 전임교수
- 現 월비스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무사 민법 전임교수
- 現 월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전임교수
- 現 공단기 민사법 대표 강사

### 2. 저서

- Slim 민사소송법 조문집 제6판(2020), 학연 권
- Fortune 민법 (2021), 학연 권
- Fortune 민법의 종결 (2021), 학연 권
-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 전정2판(2021), (주)월비스 권
- Fortune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10판(2023), 학연 권
- Fortune 完打 민소법의 종결 (2023), ACL 권

## □ 강의 일정 및 교재

### 1. 강의일정

: 10/19(목) ~ 12/1(금), 20회, 매주 수, 목, 금, 저녁(6:30 ~ 10:00) 진행(개강일은 목요일, 주의)

### 2. 강의교재

: 完打 김춘환 객관식 민법개론(초판, 학연 권, 제공, 선착순 10명) + 민사법 법령집(학연 권, 제공, 선착순 10명)

## □ 강의 내용 및 특징

1. 민사법 전공자에 의한, 민법 고득점을 위한 객관식 민법 강의

2. 민법에 대한 전반적 이론(조문, 학설, 판례)을 정확하게 이해, 암기하여 객관식 민법에 대한 고득점을 목표로 함.

3. 강의 수강 시, 강사 직접 상담에 의한 Feed back 형성

## □ 민법 공부방법론

### I. 들어가며

1.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이런 방대한 민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조문을 위주로 민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변리사시험에서는 더욱 더 민법 조문에 대한 정리가 필수적이고, 문제도 “조문”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것이 50% 이상은 된다. 다만 최근에는 최신의 중요 판례를 위주로 이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중요 조문이 적용된 중요 판례 위주로 공부 하면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대비가 될 것이다.

2. 그리고 객관식 시험은 자신의 시험시간과 문제를 푸는 속도를 제대로 체크해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이 평소애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험 2달 ~ 3달 전에는 꼭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시험 실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아래에서는 민법을 이루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분야에 대해 중요주제 위주로 공부방법을 논하기로 한다.

### II. 민법총칙

#### 1. 출제경향 및 중요주제

민법총칙은 민법의 가장 근간으로 12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특히 민법총칙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 주제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부재자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동시사망의 추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물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복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제척기간, 소멸시효 등을 들 수 있다.

#### 2. 공부방법

민법총칙 공부 시에 힘든 점은 처음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물권법과 채권법의 총칙을 공부하려 하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들은 현행 민법이 따르고 있는 판례체 체계(총칙을 먼저 규정하고 각칙을 나중에 규정하는 법기술)의 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법총칙 공부 시에는 일단 잘 몰라도 꾸준히 진도를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물권법, 채권법 등을 공부하면서 민법총칙에서 공부했던 주제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가 이해가 된다.

### III. 물권법

### 1. 출제경향 및 중요주제

물권은 보통 12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물권법의 중요주제로는 물권변동 일반, 이중보존등기, 등기추정력, 가등기 효력, 보존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점유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취득시효, 공유관계,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상린관계, 전세권, 유치권,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권리질권, 저당권 일반, 일괄경매청구권, 저당권의 효력,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등이 있다.

### 2. 공부방법

물권은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뉘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권으로, 제한물권은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나뉜다. 물권에 대한 학습은 이런 물권에 대한 규정과 체계를 이해하고 각각의 물권에 대한 특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물권법은 조문과 함께 최신 판례가 출제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꼭 최신판례를 챙겨두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다.

## IV. 채권법

### 1. 출제경향 및 중요주제

채권법은 다시 채권총론, 채권각론으로 나뉘는데, 16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먼저 채권총론의 중요주제로는 채권의 목적, 금전채권, 이행지체, 이행불능, 과실상계,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무인수, 채권양도, 변제, 상계, 공탁 등이 있다. 채권각론의 중요주제로는 계약의 성립, 쌍무계약, 계약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해약금, 매매, 임대차, 주택임대차, 도급, 조합,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책임 일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이 있다.

### 2. 공부방법론

채권법은 양이 많은 관계로 풍부한 판례, 이론, 조문이 산재해 있다. 특히 사람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채권행위를 먼저 하고, 물권행위를 하게 되므로 다양한 채권행위가 존재한다. 따라서 채권법의 경우에는 증여, 매매 등의 전형계약 등을 숙지하고, 조문 위주로 정리함으로써 양을 줄여서 시험에서 부담이 없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법은 많은 판례가 존재하므로, 최신 판례 위주로 핵심 판례는 모두 정리하여야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 민사법연구소, [cafe.daum.net/chunzivilprozess](http://cafe.daum.net/chunzivilprozess)

## □ 진도별 강의내용

| 회수  | 일시           | 중요쟁점                                      |
|-----|--------------|-------------------------------------------|
| 제1회 | 10/19<br>(목) | 민법의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
| 제2회 | 10/20<br>(금) | 자연인의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제한무능력자 및 그 상대방의 보호 |
| 제3회 | 10/25<br>(수) | 주소의 효과 - 부재 및 실종, 법인 일반, 법인의 기관, 법인의 소멸   |

|      |              |                                                                |
|------|--------------|----------------------------------------------------------------|
| 제4회  | 10/26<br>(목) | 물건, 주물과 종물, 과실, 법률행위 일반                                        |
| 제5회  | 10/27<br>(금)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
| 제6회  | 11/1<br>(수)  | 대리 일반, 표현대리, (협의의)무권대리,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관(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
| 제7회  | 11/2<br>(목)  | 물권변동 일반, 이중보존등기, 등기추정력, 가등기효력, 보존등기, 등기청구권                     |
| 제8회  | 11/3<br>(금)  | 물권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선의취득                    |
| 제9회  | 11/8<br>(수)  | 점유권일반, 점유권의 효력 소유권 일반, 구분소유권, 상린관계, 취득시효, 첩부                   |
| 제10회 | 11/9<br>(목)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관계(공유, 합유, 총유)                            |
| 제11회 | 11/10<br>(금) | 명의신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 제12회 | 11/15<br>(수) | 유치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 일반, 특수저당권, 비전형담보                          |
| 제13회 | 11/16<br>(목) | 채권의 목적, 금전채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상계                |
| 제14회 | 11/17<br>(금)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
| 제15회 | 11/22<br>(수) |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
| 제16회 | 11/23<br>(목)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변제, 대물변제, 공탁)                               |
| 제17회 | 11/24<br>(금) | 상계, 경계, 면제, 혼동, 청약과 승낙,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해지 |
| 제18회 | 11/29<br>(수)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일반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
| 제19회 | 11/30<br>(목) |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중신정기금, 화해,                         |
| 제20회 | 12/1<br>(금)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